

#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516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28일

발 의 자: 이종환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김원중, 김원태,  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  
박 석, 박춘선, 송경택,  
신복자, 오금란, 유정인,  
윤종복, 이효원, 홍국표  
의원(1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는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「주차장법」 제6조의 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 취사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일부 영업장소를 제외하기 위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중 노외주차장으로서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함(안 제2조제1항제7호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 제6조의 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시장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2조(영업장소)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(이하 “음식판매자동차 영업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(이하 “시설·장소”라 한다)로 한다. | 제2조(영업장소) ①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 |
| 1. ~ 6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~ 6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. 「주차장법」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서울특별시 <u>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 공영주차장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 그 밖에 <u>시장이</u> 음식판매자동차营业을 하려는 자의 수요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이용자의 안전,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·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. -----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</u>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인 「주차장법」의 개정사항<sup>1)</sup>을 조례에 반영함에 따라 비용발생의 여지<sup>2)</sup>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(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) 유선문의 및 각종 참고자료 등을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존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(일명 푸드트럭 존)가 없어<sup>3)</sup>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**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**

- 1) [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] 주차장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됨

※ 상위법령 개정사항 [시행 2024. 9. 20.] [법률 제20392호, 2024. 3. 19., 일부개정]

#### 「주차장법」

제6조의3(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) 누구든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[본조신설 2024. 3. 19.]

⇒ [주차장법 법령해석 국토교통부 회신]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라 야영행위,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은 제한됨

- 2) [규제영향 재정수입감소 검토] 상위 또는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은 통상 법률과 조례간 정합성 확보 차원으로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본 안의 경우 영업장소 일부가 안 제2조제1항제7호 규정 삭제에 따라 줄어들므로 이에 따른 세입감소(장소 사용료 및 점용료 수입)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음

⇒ 가령 공영주차장→기타장소(공원, 도로 등)으로 변경 시 장소 상황에 따라 사용 점용료 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서울시 세입(세외수입)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

※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절차·위생·안전관리 매뉴얼(2016) 사용료 산정기준 참고

- 3) [검토결과]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공영주차장에 **기설치된 음식판매자동차 지정장소(푸드트럭 존)가 없어** 이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 수입 또한 없으므로 본 규정을 삭제한다하더라도 **세입감소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**